

圖書館法改正案

〈圖書館法改正案作成의 經緯〉

現行 圖書館法은 1963年에 制定公布되었고 當時 이 法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圖書館界는 많은 발전이 이룩되었으나 1970年代부터 우리의 社會는 급격히 발전적으로 변모되어 나갔으며 아울러 圖書館의 機能과 役割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현행 圖書館法을 運營하는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本協會에서는 現行 法改正의 諸요성을 關係要路에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그 뜻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터이다. 한편, 해를 거듭할수록 現行法의 末備點은 크게 노출되어 나갔고, 따라서 現行法 改正의 諸요성은 더욱 절실한 當面課題가 되었다. 이에 本協會에서는 本格的으로 改正案作業에着手하여 草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法改正에 앞서 앞으로 우리나라 全體 圖書館의 發展方向을 조감할 수 있는 長期發展計劃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1975年度에 法改正試案作成을 일시 중단하고 우선 發展計劃作成을着手하였다. 그러나 法改正의 諸요성은 날로 증대하였고 發展計劃完成을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本協會에서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資料를 參考하고 發展計劃內容의 方向에 대체적으로 맞추어 法改正案을 작성키로하고 이를 위한 特別委員會를 구성하여 1次 法改正案을 完成하였다. 아울러 이 法改正에 대한 紙上公聽會形식으로 現行法에 대한 몇분들의 意見을 發表케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會員들의 意見을 接受하였다.

그러던 중에 1978年 政府에서는 圖書館行政改善을 위한 調査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法改正案作成의 諸요성이 대두되어 다시 法改正案을 作成키로 하고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였다. 여기에서는 1次案과 紙上에 발표된 意見 및 會員들이 제출한 意見, 기타 有關機關과 關聯人士들의 意見을 綜合하고 外國의 各種 資料 그간 정리된 發展計劃內容을 參考하여 1次 改正案보다는 發展的인 内容의 2次 改正案을 完成시킨 바 이를 月報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意見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協會에서는 이 案의 方向대로 現行法을 改正하여 둘 것을 政府에 建議하였고 來年度까지는 全體 圖書館界의 當面問題로 되어 있는 圖書館法改正을 實現시키기 위하여 많은 努力を 기우리고 있다.

1. 圖書館法改正의 趣旨와 意義

現行 圖書館法이 制定된 것은 1963年 10月 28日이다. 1979年 10月 28日로서 滿 16年이 經過된 셈이다.

現行 圖書館法은 당초立案過程에서 全國의 市·郡區에 公共圖書館을 義務의으로 設置하게 하는 등 圖書館育成을 國家施策으로 하는데 焦點을 두었으나 國家의 財政事情을 理由로 다만 圖書館活動을 勸告하는 微溫的인 法律로 確定되어 公布되고 말았다.

當時 圖書館界에서는 圖書館育成에 대한 國家의 施策이 表現되지 않은 이러한 法制定은 實效를 거둘수 없을 것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内容의 法律일지라도 法制定 自體로서 圖書館育成策을 講究하는 始初가 될 것이라는 意味에서 그立法을 환영하였다. 따라서 이 法制定은 적어도 圖書

館에 대한 法의 意味를 賦與한 結果가 되어 이 法制定을 起點으로 1968年까지 約 5年間에 걸쳐 우리나라 圖書館은 많은 發展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以後 國家社會는 急速한 發展과 變貌를 가져왔고, 특히 70年代初부터는近代化의 促進으로 말미암아 社會各界各層에서는 全世界 各處에서 不斷히 生產되고 있는 多樣한 文獻情報의 活用이 切實히 必要하게 되었고 따라서 圖書館은 이러한 文獻情報의 蔽集整理保存하여 이를 利用者에게 提供하여, 國家發展에 必要한 產業技術에 관한 情報 등을 提供하는 役割을 擔當하는 機關으로서 圖書館의 國家社會의 諸요성이 날로 增大되었다. 現代의 意味의 圖書館은 國家發展의 原動力を 提供해 주는 원천의 役割을擔當하고 있는 國家의 基幹施設로서 그 概念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重要한 役割을 맡고 있는 圖書館의 發展을 16

年前에 制定되어 단 한번도 現實에 맞게 改正된 일이 없는 現行 圖書館法으로서는 圖謀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現行 圖書館法의 末備點을 몇 가지 指摘해 보면, 첫째 圖書館의 育成은 國家가 主導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微溫의이며 勸告의立場을 取하고 있으며 둘째 圖書館機能의 活性化의 必要的要求에 對處할 수 있는 施策이 缺與되어 있고 셋째 圖書館의 專門性이 疎外當하고 있으며, 넷째 全國圖書館의 組織體系가 整備되어 있지 않아서 圖書館 機能의 效率을 높힐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밖에도 많은 末備點을 가지고 있는 現行 圖書館法는 그 運營에 있어서 成果를 期待할 수 없는 法規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諸般理由로 말미 암자 70年代初에 서부터 圖書館界와 出版界를 비롯한各界에서 이 法改正을 強力히 要求해 오고 있으나 오늘날까지 改正없이 放置되어 있다.

先進各國에서는 國家社會發展을 위한 圖書館의 役割을 重要視하여 이미 60年代와 70年代初에 걸쳐 圖書館政策에 대한 改革을 斷行한 바 있다. 이러한 外國의 例를 상기하면서 우리도 圖書館政策을 國家의 強力한 文化敎育施策으로서 推進하지 않으면 先進을 向한 우리의 意志가 效果의으로 實現될 수 없음을 再認識하여 16年間이나 단 한번의 改正作業이 없었던 現行 圖書館法를 現實의이며 보다 發展的인 內容으로 改正함으로써 國家發展에 積極寄與할 수 있도록 複 밝침 해주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韓國圖書館協會는 全體 圖書館界와 有關機關 등의 衆意를 廣範圍하게 모으고 이를 銳意研究檢討하여 圖書館의 設置運營 등에 관한 內容을 規定한 새로운 圖書館法 改正案을立案하게 되었다. 이 改正案이 成立되어 圖書館活動에 새롭고 發展的인 法의 根據가 賦與된다면 圖書館機能의 充實化는勿論 國家發展을 위한 圖書館의 役割을 크게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2. 圖書館法改正要綱과 骨子

가. 改正要綱

1) 改正方向에 있어서 國立中央圖書館, 公共圖書館, 校園圖書館法 등 分立主義에 의한 圖書館에 대한 基本

의인 法制面에서의 論議도 있었으나 現行法과 같이 單一體制가 國家政策上 有益하고 옳다는 結論을 얻었다.

2) 本改正案은 審議上 便宜를 위하여 全面改正의 形式을 가급적 피하고 現行法形式에 두리 안에서 補完削除形式을 取하였다.

3) 內容의 補完과 削除變更도 重要하고도 不可避한 것을 除外하고는 既存法 內容의 改正에 신중을 期하였다.

4) 既存法上 “閣令으로 定한다”와 같이 論難의 餘地가 없는 것은 모두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로 고치었다.

5) 補完의 경우 해당 條項에 連結內容의 體系性을維持하였으며 條表示는 順延하였다.

나. 改正의 骨子

1) 圖書館에 대한 定義를 現實의인 內容으로 補完함으로써 圖書館의 概念을 새로이 定立하였다.

2) 圖書館施設 및 運營에 대한 基準의 圖書館의 平準화한 發展策을 講究한다.

3) 圖書館育成에 대한 國家次元의 施策을 마련할 審議機構를 둔다.

4) 國家文獻의 納入條項을 補完하여 모든 資料와 國家의 貴重文化財의 網羅的 萬集과 保存策을 講究한다.

5) 現行法에서는 國立中央圖書館을 單純한 公共圖書館으로 取扱하고 있는 것을 國內에 韓國을 代表하고 館種을 超然한 姿勢確立과 機能을 擴大強化하여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面貌를 具現한다.

6) 各種 圖書館運營에 需要한 財政確保策을 講究한다.

7) 圖書館奉仕의 極大化를 위하여 圖書館專門職인 司書의 資格基準을 強化한다.

8) 全國 各種圖書館間의 相互協力を 圖謀하는 制度를 마련한다.

9) 大學 및 學校敎育을 바람직하게 發展시키기 위하여 大學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의 機能擴大를 圖謀한다.

10) 情報產業社會에 對處하기 위한 專門圖書館의 設置運營을 積極獎勵한다.

11) 特殊環境속에 있는 者와 身體障礙者들을 위한 特殊圖書館의 設置運營을 積極獎勵한다.

12) 圖書館利用者의 低邊擴大를 圖謀한다.

3. 圖書館法改正案의 大綱

가. 法의 構成

現 行 法			改 正 法 案		
章	節	條	章	節	條
第1章 總 則		13	第1章 總 則		8
			第2章 國立中央圖書館		4

第2章 公共圖書館	第1節 總 則 第2節 國立中央圖書館 第3節 公立의 公共圖書館 第4節 私立의 公共圖書館	11	第3章 公共圖書館	第1節 總 則 第2節 公立의 公共圖書館 第3節 私立의 公共圖書館	15
第3章 學校圖書館		2	第4章 大學圖書館		5
			第5章 學校圖書館		7
			第6章 專門圖書館		3
			第7章 特殊圖書館		3
第4章 罰 則		2	第8章 圖書館協力網	第1節 總 則 第2節 中央館 第3節 地域代表圖書館	7
4 章	29 條		第9章 罰 則		2
			9 章	54 條	

나. 各章別 要點

第1章 總 則

1) 第1條의 圖書館種類에서 設立 目的에 따른 區分과 設立者에 따른 區分을 없애고 이를 國立圖書館,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 專門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하였고, 第 2 項, 第 3 項, 第 4 項, 第 5 項, 第 6 項, 第 7 項으로 각각나누어 그 機能을 具體화하고 現實的으로 明示하였다.

2) 現行 第4條에서 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規定을 刪除하였다.

3) 現行 第5條의 “圖書館施設”을 第5條의 “圖書館의 施設資料 및 運營”으로 고치고 各種 圖書館施設基準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도록 하였다.

4) 第5條에서 司書의 資格과 養成에 관한 規定을 新設함으로써 圖書館의 專門性을 考慮하는 한편 圖書館奉仕의 極大化를 圖謀하도록 專門職司書의 資質을 上向調整하였다.

5) 第6條에서 國家次元의 圖書館政策을 審議할 “圖書館發展委員會”를 國務總理直屬下에 設置하도록 하였다.

6) 第7條에서 現行 第12條의 圖書館資料의 提供과 納本을 “圖書館資料의 納入”으로 고치고 圖書館資料와 國家文化財의 網羅의 蒐集과 保存을 可能케 하였다.

7) 第8條에서 圖書館專門職團體인 圖書館協會의 機能을 擴大하여 그 活動을 強化도록 하였다.

第2章 國立中央圖書館

8) 現行法 第17條, 第18條에서 國立中央圖書館을 一般公共圖書館과 同格化하여 取扱한 것을 留을 달리하여 獨立시켰고, 第9條와 第10條에서 이를 國家代表圖

書館으로 指定하는 한편 機能을 強化하였다.

9) 第11條에서 “國立中央圖書館運營委員會”를 設置하도록 하였다.

10) 第12條에서 國立中央圖書館長의 職位를 政府委員級으로 하였고 專門職副館長을 1級公務員으로서 补하도록 함으로써 國家代表圖書館의 面貌를 갖추도록 하였다.

第3章 公共圖書館

11) 現行法 “第2章 公共圖書館”을 第3章 “公共圖書館”으로 하고 이를 總則, 公立의 公共圖書館, 私立의 公共圖書館 등 3節로 區分하여 機能과 活動을 具體化하였다.

12) 現行法 第14條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勸告規定을 改正法에서 第15條와 第21條에서 設置義務規定으로 하는 한편 奉仕範圍를 擴大함으로써 福祉國家를 具現하는 積極的인 文化政策을 遂行도록 하였다.

13) 現行法 第8條에서는 圖書館使用料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改正法 第18條에서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圖書館本來의 奉仕姿勢로 一致시켰다.

14) 第16條에서 “公共圖書館運營委員會”設置를 規定하였다.

15) 現行 第19條와 第21條에서 規定한 公私立圖書館에 대한 財政補助範圍를 擴大하여 改正法 第22條와 第25條에서 施設과 設備에 要하는 經費와 기타 必要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公共圖書館育成을 위한 財政確保策을 講究하였다.

第4章 大學圖書館

16) 現行法에서는 大學圖書館에 대한 事項을 學校圖書館에 포함하여 取扱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第4章으

로 하여 大學圖書館에 대한 設置, 施設 및 資料, 職員, 所管部署, 學外者에의 利用提供 등으로 나누어 第28條, 第29條, 第30條, 第31條, 第32條에 각各 具體的으로 規定하였다.

第5章 學校圖書館

17) 現行法 “第3章 學校圖書館”을 改正法에서는 “第5章 學校圖書館”으로 하여 第33條와 第34條에서 國家의 設置義務와 任務를 規定하였다.

18) 第35條에서 學校圖書館의 機能을 擴大規定함으로써 效率的인 學校教育을 圖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 第36條, 第37條, 第38條에서 각各 基準, 所管部署, 一般利用에의 提供 등을 規定하였다.

20) 第39條에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施設 및 運營의 基準에 達할 수 있도록 補助金을 支給하여 學校圖書館의 平準化한 發展을 期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6章 專門圖書館

21) 政府機關, 公共團體, 學術團體, 產業團體 등의 構成員들이 調査와 學術研究를 할 수 있도록 專門圖書館의 設置를 積極勸獎하기 위하여 이 章을 新設하고 第40條, 第41條, 第42條에 設置, 職員, 一般에의 提供 등을 規定함으로써 產業社會에 對處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7章 特殊圖書館

22) 特殊環境에 있는 者와 身體障礙者를 위한 圖書館의 設置를 積極勸獎기 위하여 이 章을 New設하고 第43條, 第44條, 第45條에 設置, 職員, 一般利用에의 提供등을 規定하였다.

第8章 圖書館協力網

23) 圖書館 奉仕業務의 效率을 높히기 위하여 全國各種 圖書館의 相互協力を 圖謀하는組織體系를 마련기 위하여 이 章을 New設하고 第1節 總則, 第2節 中央館, 第3節 地域代表圖書館으로 나누어 각各 內容을 具體的으로 規定하였다.

24) 第46條와 第47條 및 第48條에서 圖書館協力網에 관한 定義, 機能, 職員事項을 規定하였다.

25) 第49條, 第50條에서 中央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되도록 指定하고 그 機能을 具體的으로 規定하였다.

26) 第51條, 第52條에서 各市道에 地域代表圖書館을 두도록하고 機能과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였다.

第9章 罰則

27) 現行法 “第4章 罰則”을 改正法에서는 “第9章 罰則”으로 하였으며 第53條와 第54條에서 罰金과 過怠料納入의 方法과 金額을 現實化하여 規定하였다.

5. 도서관법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전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정보유통을 효율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교양, 조사연구 및 정보입수에 도움을 주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자료”라 함은 도서,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수표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테이프 등 시청자 자료, 필사자료, 마이크로폼자료, 향토자료 등 모든 종류와 형태의 기록물을 통칭한다.

제3조(도서관의 종류) 1)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2) 전항의 “국립도서관”이라 함은 국가가 설립 운영하며 그봉사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제1항의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교양, 조사 및 정보입수에 도움을 주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1항의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대학(교) 및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교육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학생, 교직원 및 부설연구소 직원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학습, 교양, 조사연구 및 정보입수에 도움을 주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제1항의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등 및 중등교육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학습, 교양, 조사 및 정보입수에 도움을 주는 일과 학생들에게 독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제1항의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학술단체, 산업체 등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구성원들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조사 및 학술연구에 도움을 주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제1항의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사설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구성원들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교도소 등 특수환경 속에 있는 자와 맹인 등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도서관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시설, 자료 및 운영) 1)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물 및 시설과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2) 도서관은 그 환경과 시설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편리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 5 조(사서의 자격과 양성) 1) 사서는 정사서(1급 2급) 출사서로 구분하며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2) 사서교사의 자격은 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사서 또는 사서교사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도서관 발전위원회의 설치) 1) 전국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서관 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할 도서관 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며 정부관계 부처대표, 국립중앙도서관장, 국회도서관장, 학계대표, 산업계대표 등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도서관자료의 납입)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각지역 중앙도서관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출판사 또 전향 이외의 자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의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전향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납입한 자가 그에 대한 실비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8 조(도서관협회) 1) 도서관의 설립자와 사서는 도서관발전, 도서관간의 협력,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제도서관단체와의 협력교류 및 전체도서관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도서관협회를 조직할 수 있다.

2) 도서관협회는 도서관발전위원회 및 각종 도서관의 전문적인 자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협회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 2 장 국립중앙도서관

제 9 조(설치) 1) 국가는『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 중앙도서관을 둔다.

2) 국립중앙도서관은 업무의 분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관 및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제 10조(기능) 국립중앙도서관은 제50조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내자료의 수집 및 보존
2. 한국에 관한 외국출판물의 수집 및 보존
3. 국외자료의 망라적 수집
4. 국내출판물에 대한 인쇄목록 카드의 작성 및 배포
5. 국가서지의 작성 및 배포
6. 국내연속간행물의 월간색인 및 연간누가색인작성
7. 도서관 협력망의 통합
8. 종합목록의 작성
9. 자료의 국제교류
10. 사서직 공무원의 연수
11. 정부의 각종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12. 타도서관에 대한 기술적 업무의 지도 및 협조
13.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조(국립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1)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국립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운영위원회에는 주무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이상 9명이하의 운영위원을 두며 그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임명을 제청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운영계획 및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조(국립중앙도서관장 등) 1)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정부위원직급으로 보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정사서(1급)로 보하는 1급 공무원의 부관장 1인을 둔다.

제 3 장 공공도서관

제 1절 총 칙

제 13조(설립자) 공공도서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제 14조(설치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사회교육 및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치 육성하여야 한다.

제 15조(기능) 공공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통하여 공중에 봉사한다.

- 1)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상의에 응하는 일
-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행사를 주

최하거나 장려하는 일

- 3) 공중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 4) 다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과 협력하여 자료를 상호교류하는 일
- 5) 도서관업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 6) 기타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1) 공공도서관의 설립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2) 전향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준) 공공도서관의 시설, 자료, 직원, 경비 및 봉사활동과 기타 필요한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도서관의 사용료) 공립의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로 부터 입관료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정관명령) 감독청은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자에 대하여 정관을 명령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2. 제 4조 제 1항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3.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관의 방법이외로는 이를 감독할 수 없을 때

제20조(폐관신고)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할 때에는 그 자유와 자료에 관한 조치상황을 밝혀 소관부서에 폐관신고하여야 한다.

제 2절 공립의 공공도서관

제21조(설치) 1)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향의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봉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지역사정에 따라 분관 또는 이동문고를 둘 수 있다.

제22조(보조) 1) 국가는 도서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에 요하는 경비의 일부와 기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절 사립의 공공도서관

제23조(설치) 사립의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소관부서) 사립의 공공도서관은 제 1차로 시군지역대표도서관, 제 2차로 시, 도지역대표도서관, 제 3차로 국립중앙도서관, 제 4차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관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25조(보조)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립의 공공도서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립자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한 때에는 그 보조를 받은 사립의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도 및 시정명령) 1) 국가와 지역대표도서관은 사립의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역대표도서관은 사립의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시설 또는 운영 기타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소관부서는 사립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 4장 대학도서관

제28조(설치) 교육법에 규정된 대학(교)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등등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시설 및 자료)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는 대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최저수준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직원) 1) 대학도서관에는 제 5조에 규정된 사서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하며 관장은 1급 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

2) 전향의 직원 중 1급 정사서에 대하여는 대학의 교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3) 제 1항의 규정 중 직원의 정원과 제 2항에 규정된 1급 정사서의 대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소관부서) 대학도서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를 받는다.

제32조(학의자에의 이용제공) 대학도서관은 그 목적 달성을 지장이 없는 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 5장 학교도서관

제33조(설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한 각급 학교에는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학교도서관의 육성을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도와 기타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기능) 학교도서관은 다음 자호의 활동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효율화에 이바지 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일

2. 학생들에게 독서지도를 하는 일

3. 학생들의 교양과 정서를 함양하는 일

4. 기타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제36조(기준) 학교도서관의 시설, 자료, 직원, 경비 및 봉사활동과 기타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소관부서) 학교도서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를 받는다.

제38조(일반 이용에의 제공) 학교도서관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있는 한 공중에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다.

제39조(보조)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학교도서관이 제4조 및 제36조에 규정한 시설 및 운영의 기준에 달할 수 있도록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2) 국가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전문도서관

제40조(설치)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이나 단체는 이 법과 당해 기관의 법규, 조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1조(직원) 전문도서관에는 사서를 두어야 한다.

제42조(일반 이용에의 제공) 전문도서관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있는 한 일반의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 7 장 특수도서관

제43조(설치) 제3조 제7항에서 규정한 법인이나 단체는 이 법과 당해 기관의 법규, 조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직원) 특수도서관에는 사서를 두어야 한다.

제45조(일반 이용에의 제공) 특수도서관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있는 한 일반 공중이나 특수단체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 8 장 도서관협력망

제 1 절 총 칙

제46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관협력망”이라 함은 도서관 봉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각종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전체도서관의 조직 체계를 말한다.

제47조(기능) 도서관협력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

하여 개별적 활동에 수반되는 각개 도서관의 낭비를 막고 그 봉사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1. 분담수서제도의 실시

2. 상호대차제도의 실시

3. 인쇄카드제도의 실시

4. 참고업무망의 운영

5. 종합목록의 편찬 기타 국가서지개발에의 협력

6. 시설, 서식 기타 봉사활동의 표준화의 추진

7. 도서관업무 처리기술에 관한 지도 및 협력

8. 기타 봉사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협력

제48조(지원) 각종 도서관의 소관부서는 도서관협력망을 통한 도서관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2 절 중앙관

제49조(중앙관)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협력망의 “중앙관”이 된다.

제50조(중앙관의 기능) 중앙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협력망의 각급 “대표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일

2.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협력망의 운영을 통괄하는 일

3. 도서관협력망을 통하여 법 제10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지도 및 원조 기능을 수행하며 산하도서관의 봉사활동을 조정하는 일

4. 산하도서관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아 그 성과를 분석평가 하는 일

5. 서지의 통정, 기타 국가적 도서관사업을 주관하거나 그 일에 관하여 산하도서관을 지휘하는 일

제 3 절 지역대표도서관

제51조(지역대표관) 1)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도에 각각 1개씩의 “지역대표관”을 둔다.

2) 전향의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 각급 도서관을 통괄한다.

3) 필요에 따라 시, 군에도 그 지역대표관을 둘 수 있다.

제52조(시행령) 도서관협력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장 별 칙

제53조(벌금)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부서의 정관명령에 위반한 자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벌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파태료)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자료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파태료를 처한다.

2) 제7조에 규정한 자료가 비매 자료로서 이의 납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1963·10·28 법률 제 1,424호)

1)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

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립의 공공도서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감독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別表 I〉

司書의 資格基準(改正案)

正 司 書 (1級)	正 司 書 (2級)	準 司 書
<p>1. 圖書館學 博士學位를 所持한 者 2. 正司書(2級)로서 碩士學位를 所持하고 圖書館에 관한 論文 2篇以上을 發表한 者 3. 正司書(2級)로서 圖書館實務經歷 10年以上과 圖書館에 관한 論文 2篇以上을 發表한 者 4. 正司書(2級)로서 博士學位를 所持한 者</p>	<p>1.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 또는 同等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教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 2. 準司書로서 司書業務에 3年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教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p>	<p>1. 專門大學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 2. 大學에서 圖書館學을 副專攻하고 圖書館學教科目을 20學點以上 履修한 者 3. 專門大學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教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p>

6. 現行法과 改正法案의 比較

現 行	改 正
<p>第1章 總 則</p> <p>第1條(目的) 이 法은 圖書館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필 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 함으로써 國民의 教育과 文化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圖書館”이라는 함은 圖書, 記錄, 視聽覺資料, 國家 및 地方行政資料, 鄉土資料 및 기타 필요한 資料(이하 “圖書館資料”라 한다)를 萬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の 利用에 供하게 하여 그 調査, 研究, 學習, 教養, 레크레이션, 기타 社會教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p>	<p>第1章 總 則</p> <p>第1條(目的) 이 法은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함으로써 國民의 教育과 文化發展에 寄與하고 社會各分野의 情報流通을 效率化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1) 이 法에서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이하 “資料”라 한다)를 萬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에게 利用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教養, 調査研究 및 情報入手에 도움을 주는 일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p> <p>2) 이 法에서 “資料”라 함은 圖書, 小冊子, 連連刊行物, 樂譜, 地圖, 手票 등 各種 印刷資料, 映畫필름, 슬라이드, 音盤, 테이프 등 視聽覺資料, 마이크로폰資料, 鄉土資料 등 모든 種類와 形態의 記錄物을 統稱한다.</p>
<p>第3條(圖書館의 種類) 1)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 公共圖書館, 私立圖書館으로 區分하고 그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한다.</p> <p>2) 前項에서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萬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의 教養과 調査研究 및 레크레이션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p> <p>3) 第1項에서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萬集, 整理, 保存하여 學生 및 教員의 學習, 教養調査研究 및 레크레이션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p>	<p>第3條(圖書館의 種類) 1) 圖書館은 國立圖書館,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한다.</p> <p>2) 前項의 “國立圖書館”이라 함은 國家가 設立運營하며 그 奉仕對象을 全國民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p> <p>3) 第1項의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資料를 萬集, 整理, 保存하여 該當地域住民에게 利用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教養, 調査 및 情報入手에 도움을 주는 일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p> <p>4) 第1項의 “大學圖書館”이라 함은 大學(校) 및 教育法에 規定된 高等教育機關에서 資料를 萬集, 整理, 保存하여 學生, 教職員 및 附設研究所 職員에게</p>

現	行	改	正
4) 第1項에서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法人 또는 團體가 圖書館資料를 萬集, 整理, 保存하여 그 所屬員의 教養과 調查, 研究 및 레크레이션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利用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學習, 教養, 調查, 研究 및 情報入手에 도움을 주는 일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4條(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 特殊圖書館과 그 設立者에 대하여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5) 第1項의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初等 및 中等教育機關에서 資料를 萬集, 整理, 保存하여 學生 및 教職員에게 利用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學習, 教養, 調查 및 情報入手에 도움을 주는 일과 學生들에게 讀書指導를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5條(圖書館의 施設) 1)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는데 필요한 建物, 圖書館資料, 閱覽施設 및 기타의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2) 公共圖書館은 그 環境과 施設이 利用에 편리하고 保健, 衛生 또는 管理에 適合하여야 한다. 3) 公共圖書館의 施設基準은 閣令으로 定한다.		6) 第1項에서 “專門圖書館”이라 함은 政府機關, 公共機關, 學術團體, 產業體 등에서 資料를 萬集, 整理, 保存하여 構成員들에게 利用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調查 및 學術研究에 도움을 주는 일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6條(司書職員의 配置) 1)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에는 閣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資料 및 運營에 관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 2)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의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7) 第1項에서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私設 및 公共機關이나 團體에서 資料를 萬集, 整理, 保存하여 構成員들에게 利用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職務遂行에 도움을 주는 일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및 矯導所 등 特殊環境속에 있는 者와 맹인 등 身體障礙者를 위한 圖書館施設을 말한다.	
第7條(國家 등에 대한 公共圖書館設置의 勸獎)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向上을 위하여豫算의 範圍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4條(圖書館의 施設, 資料 및 運營) 1)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는데 필요한 建物 및 施設과 資料를 갖추어야 하며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 2) 圖書館은 그 環境과 施設이 利用者에게 편리하고 편리하도록 維持되어야 한다.	
		5) 第1項의 “司書의 資格과 養成” 1) 司書는 正司書(1級, 2級), 準司書로 區分하여 別表1의 資格基準에 該當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證을 받아야 한다. 2) 司書教師의 資格은 教育法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3) 司書 또는 司書教師의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6) 第1項의 “圖書館發展委員會의 設置” 1) 全國圖書館의 均衡있는 發展과 圖書館機能의 效率을 높이기 위한 國家次元의 政策을 마련할 圖書館發展委員會를 國務總理所屬下에 두며 政府關係部處代表, 國立中央圖書館長, 國會圖書館長, 學界代表, 產業界代表 등 國務總理가 委嘱하는 15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2) 圖書館發展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7) 第1項의 “圖書館資料의 納入” 1)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料를 發行 또는 製作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中央圖書館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하는 各地域中央圖書館에 이를 納入하여야 한다. 2) 出版社 또는 前項以外의 者가 資料를 發行 또는 製作하였을 때에는 그 發行 또는 製作日로 부터 30日以內에 그 資料의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入하여야 한다.	

現 行	改 正
第8條(圖書館의 使用料)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p>3)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를 納入한 者가 그에 대한 實費補償을 請求할 때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實費를 補償하여야 한다.</p>
第9條(監督廳) 1) 私立의 公共圖書館은 第1次로 市·郡教育長(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教育委員會를 포함한다) 第2次로 道教育委員會, 第3次로 文敎部長官의 指導監督를 받는다. 2) 校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에 規定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監督를 받는다.	<p>第8條(圖書館協會) 1) 圖書館의 設立者와 司書는 圖書館發展, 圖書館運營에 관한 調査研究와 國際圖書館團體와의 協力交流 및 全體圖書館人들의 社會的地位向上과 權益옹호를 위하여 圖書館協會를 組織할 수 있다. 2) 圖書館協會는 圖書館發展委員會 및 各種 圖書館의 專門的인 諮問에 적극 助力하여야 한다.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圖書館協會에 대하여 補助를 할 수 있다.</p>
第10條(停館命令) 監督廳은 公共圖書館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者에 대하여 停館을 命할 수 있다. 1. 美風良俗을 현저하게 害하는 行爲가 있을 때 2. 第5條 第3項에 規定된 施設基準을 維持하지 못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停館의 方法以外로는 이를 監督할 수 없을 때	
第11條(廢館申告) 公共圖書館의 設立者が 당해 圖書館을 廢館한 때에는 그 事由와 圖書에 관한 措置狀況을 針對 監督廳에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12條(圖書館資料의 提供과 納本) 1) 國家機關이 官報, 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가 公報, 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과 그가 設立한 公共圖書館에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3) 出版社 또는 前項以外의 者가 圖書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以內에 그 刊行物의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入하여야 한다. 4)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刊行物의 納本을 한 者가 그 刊行物에 대한 實費補償을 請求할 때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實費를 補償하여야 한다.	
第13條(圖書館協會) 1) 圖書館의 設立者は 圖書館相互間의 資料交換, 運營管理에 대한 研究 또는 國際圖書館團體와의 協力 및 기타 事項에 관한 協助와 全體圖書館人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向上을 위하여 圖書館協會를 組織할 수 있다.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圖書館協會에 대하여 補助를 할 수 있다.	

現	行	改	正
	第2章 公共圖書館 第1節 總 則 第14條(設立者) 公共圖書館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만이 設立할 수 있다.		第2章 國立中央圖書館 第9條(設置) 1) 國家는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 2) 國立中央圖書館은 業務의 分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 및 附屬機關을 둘 수 있다.
	第15條(公共圖書館의 機能) 公共圖書館은 다음 각號의 活動을 통하여 公衆에 奉仕한다. 1. 圖書館資料를 莊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의 利用에 供하고 그 相議에 응하는 일 2. 讀書會, 研究會, 鑑賞會, 展示會 기타 行事를 主催하거나 奨勵하는 일 3. 다른 圖書館 또는 學校圖書館이나 特殊圖書館과 協助하여 圖書館資料를 相互交流하는 일 4. 圖書館業務에 관하여 調查研究하는 일 5. 기타 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第10條(機能) 國立中央圖書館은 第50條에 規定한 事項以外에 다음의 事項을 관掌한다. 1. 國內資料의 莊集 및 保存 2. 韓國에 관한 外國出版物의 莊集 및 保存 3. 國外資料의 網羅의 莊集 4. 國內出版物에 대한 印刷目錄카드의 作成 및 配布 5. 國家書誌의 作成 및 配布 6. 國內連連刊行物의 月間索引 및 年間累加索引 作成 7. 圖書館協力網의 統轄 8. 綜合目錄의 作成 9. 資料의 國際交流 10. 司書職公務員의 研修 11. 政府의 各種 記錄物의 保存 및 管理 12. 他圖書館에 대한 技術的 業務의 指導 및 協助 13. 圖書館運營에 관한 調査研究 14. 기타 필요한 事項
	第2節 國立中央圖書館 第16條(設置) 1) 文敎部長官所屬下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 2) 國立中央圖書館의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		第11條(國立中央圖書館運營委員會) 1) 國立中央圖書館 運營의 效率을 높히기 위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이 國立中央圖書館運營委員會(以下“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2) 運營委員會에는 主務部長官이 委嘱하는 7名이상 9名이하의 運營委員을 두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3) 運營委員會는 國立中央圖書館長의 任命을 提請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의 基本運營計劃 및 기타 國立中央圖書館의 發展에 필요한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4) 運營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7條(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國立中央圖書館은 第15條에 規定한 事項외에 다음의 事項을 管掌한다. 1. 國家에 관한 文獻의 莊集 및 保存 2. 國內外書誌의 作成 및 그 紹介 3. 圖書館資料의 國際交流 4. 圖書館學에 관한 調査研究 5. 他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業務에 관한 指導 및 援助		第12條(國立中央圖書館長 등) 1) 國立中央圖書館長은 政府委員職級으로 補한다. 2) 國立中央圖書館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3) 國立中央圖書館에는 正司書(1級)로 補하는 1級公務員의 副館長 1人을 둔다.
	第3節 公立의 公共圖書館 第18條(公立의 公共圖書館 設置) 1) 各級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同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 2) 前項의 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部를 두어야 하며 地域的事情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文庫를 둘 수 있다.		

現 行	改 正
第19條(補助)國家는 公共圖書館을 設置 運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豫算의 範圍안에서 圖書館의 施設와 設備에 要하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 4 節 私立의 公共圖書館	
第20條(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設置하고자 하는 著는 第 5 條 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第21條(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한 補助) 1)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서 閣令이 定하는 司書職員을 두는 경우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豫算의 範圍안에서 그 設立者에 대하여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를 한 때에는 그 補助를 받은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立者에 대하여 特別한 指導監督을 할 수 있다.	
第22條(指導, 助言 및 是正命令)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하여 그 運營에 관하여 專門의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그 施設 또는 運營 기타에 관하여 法令의 規定을 違反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是正을 命할 수 있다.	
第23條(報告) 監督廳은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부터 필요한 報告를 받을 수 있다.	
第24條(圖書館과 同種의 施設) 누구든지 圖書館과 同種의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다만,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第 3 章 學校圖書館	第 3 章 公共圖書館
第25條(設置) 1)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 實業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圖書館을 두어야 한다. 2)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한다.	第 1 節 總 則 第 13 條(設立者) 公共圖書館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만이 設置할 수 있다. (現行法 第14條와 同一)
第26條(職員) 學校圖書館의 職務를 담당할 職員으로서 實業高等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하며,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각각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어야 한다.	第14條(設置義務)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의 向上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 育成하여야 한다.
第27條(一般의 利用에의 提供) 學校圖書館은 그 目的達成에 支障이 없는 限 公衆의 利用에 提供할 수 있다.	第15條(機能) 公共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통하여 公衆에 奉仕한다. 1) 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에게 利用하게 하고 그 相談에 응하는 일 2) 讀書會, 研究會, 鑑賞會, 展示會 기타 行事를 主催하거나 嘉獎하는 일(現行法 第15條 第 2 項과 同一) 3) 公衆의 生活에 필요한 情報를 提供하는 일 4) 다른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과 協力하여 資料를 相互交流

現	行	改	正
		하는 일 5) 圖書館業務에 관하여 調査研究하는 일(現行法 第15條 第4項과同一) 6) 기타 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現行法 第15條 第5項과同一)	
		第16條(圖書館運營委員會) 1) 公共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의 效率적인 運營을 위하여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 2) 前項의 圖書館運營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7條(基準) 公共圖書館의 施設, 資料, 職員, 經費 및 奉仕活動과 기타 필요한 基準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8條(圖書館의 使用料) 公立의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 부터 入館料를 받을 수 있다.	
		第19條(停館命令) 現行法 第10條와同一	
		第20條(廢館申告)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할 때에는 그 事由와 資料에 관한 措置狀況을 밝혀 所管部署에 廢館申告하여야 한다.	
		第2節 公立의 公共圖書館	
		第21條(設置) 1) 各級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 2) 前項의 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 老人, 身體障礙者 등에 대한 奉仕를 포함하여야 하며 地域事情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文庫를 둘 수 있다.	
		第22條(補助) 1) 國家는 圖書館을 設置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施設과 設備에 要하는 經費의一部과 기타 필요한 經費의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2) 補助金의 交付에 관한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節 私立의 公共圖書館	
		第23條(設置)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所管部署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24條(所管部署) 私立의 公共圖書館은 第1次로 市郡 地域代表圖書館, 第2次로 市道地域代表圖書館, 第3次로 國立中央圖書館 第4次로 國立中央圖書館의 所管部署의 監督을 받는다.	
		第25條(補助) 1)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私立의 公共圖書館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豫算의範圍안에서 그 設立者에 대하여 經費의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2) 補助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과 條例로서 定한다.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를 한 때에는 그 補助를 받은 私立의 公共圖	

現 行	改 正
	<p>書館에 대하여 특별한 指導監督을 할 수 있다. (第22條 第2項과同一)</p> <p>第26條(指導 및 是正命令) 1) 國家와 地域代表圖書館은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하여 專門的인 指導를 할 수 있다.</p> <p>2) 國家와 地域代表圖書館은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그 施設 또는 運營 기타에 관하여 法令의 規定을 違反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是正을 命令할 수 있다.</p> <p>第27條(報告) 所管部署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부터 필요한 報告를 받을 수 있다.</p>
第4章 罰 則	第4章 大學圖書館
<p>第28條(罰金) 第2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開設한 者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監督廳의 停館命令에 違反한 者는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29條(過怠料) 第12條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당해 刊行物의 定價의 倍에 상당하는 金額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第28條(設置) 教育法에 規定된 大學(校) 및 기타 法律에 規定된 同等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p> <p>第29條(施設 및 資料) 大學圖書館의 施設 및 資料는 大學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適正한 水準을 維持하여야 하며 그 最低水準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30條(職員) 1) 大學圖書館에는 第5條에 規定된 司書와 기타 필요한 職員을 두어야 하며 館長은 正司書(1級)資格證을 所持한 者로 補한다.</p> <p>2) 前項의 職員中 正司書(1級)에 대하여는 大學의 教員에 相應하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p> <p>3) 第1項의 規定中 職員의 定員과 第2項에 規定된 正司書(1級)의 대우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31條(所管部署) 大學圖書館은 教育法와 私立學校法에 規定된 當該 school의 監督廳의 指導를 받는다.</p> <p>第32條(學外者에의 利用提供) 大學圖書館은 그 目的達成에 지장이 없는限 一般個人이나 團體의 利用에 提供할 수 있다.</p>
	第5章 學校圖書館
	<p>第33條(設置)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와 이에 準한 各級學校에는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p> <p>第34條(國家의 任務) 國家는 學校圖書館의 育成을 위하여 그 設置 및 運營에 관한 專門的인 指導와 기타 學校圖書館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p> <p>第35條(機能)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통하여 學校教育의 效率化에 이바지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學校教育에 필요한 資料를 莫集, 整理, 保存하여 學生과 教職員에게 利用하게 하는 일 2. 學生들에게 讀書指導를 하는 일 3. 學生들의 教養과 情緒를 함양하는 일 4. 기타 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p>第36條(基準) 學校圖書館 施設, 資料, 職員, 經費 및 奉仕活動과 기타 學校圖書館의 運營에 필요한 基準</p>

現 行	改 正
	<p>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37條(所管部署) 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에 規定된 當該學校의 監督廳의 指導를 받는다.</p> <p>第38條(一般利用에 의 提供) 學校圖書館은 그 目的達成에 支障이 없는 限 公衆에의 利用에 提供하도록 한다.</p> <p>第39條(補助) 1)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에서 設置한 學校의 學校圖書館이 第 4 條 및 第36條에 規定한 施設 및 運營의 基準에 達할 수 있도록 經費의 一部를 補助하여야 한다. 2) 國庫補助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第 6 章 專門圖書館
	<p>第40條(設置) 第 3 條 第 6 項에서 規定한 法人이나 團體는 이 法과 當該 機關의 法規, 條例, 定款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p> <p>第41條(職員) 專門圖書館에는 司書를 두어야 한다.</p> <p>第42條(一般利用에 의 提供) 專門圖書館은 그 目的達成에 支障이 없는 限 一般의 個人 또는 團體의 利用에 提供할 수 있다.</p>
	第 7 章 特殊圖書館
	<p>第43條(設置) 第 3 條 第 7 項에서 規定한 法人이나 團體는 이 法과 當該 機關의 法規, 條例, 定款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p> <p>第44條(職員) 特殊圖書館에는 司書를 두어야 한다.</p> <p>第45條(一般利用에 의 提供) 特殊圖書館은 그 目的達成에 支障이 없는 限 一般公衆이나 特殊團體의 利用에 提供할 수 있다.</p>
	第 8 章 圖書館協力網
	第 1 節 總 則
	<p>第46條(定義) 이 法에서 “圖書館協力網”이라 함은 圖書館奉仕業務의 效率을 높히기 위하여 全國 各種 圖書館의 相互協力を 圖謀하는 全體圖書館의 組織體系를 말한다.</p> <p>第47條(機能) 圖書館協力網은 다음과 같은 機能을 통하여 個別的 活動에 隨伴되는 各個 圖書館의 浪費를 막고 그 奉仕效率의 極大化를 圖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分擔收書制度의 實施 2. 相互貸借制度의 實施 3. 印刷카드制度의 實施 4. 參考業務網의 運營 5. 綜合目錄의 編纂 기타 國家書誌開發에의 協力 6. 施設, 書式 기타 奉仕活動의 標準화의 推進 7. 圖書館業務處理技術에 관한 指導 및 協力 8. 기타 奉仕業務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 및 協力
	<p>第48條(支援) 各種 圖書館의 所管部署는 圖書館 協力網을 통한 圖書館의 活動을 支援하여야 한다.</p>
	第 2 節 中 央 館
	<p>第49條(中央館) 國立中央圖書館은 圖書館協力網의 “中</p>

現 行	改 正
	<p>央館”이 된다.</p> <p>第50條(中央館의 機能) 中央館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圖書館協力網의 各級 “代表館”을 指定 또는 變更하는 일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圖書館協力網의 運營을 統轄하는 일 圖書館協力網을 通하여 法第10條 第12項의 規定에 의한 各種의 指導 및 援助機能을 途行하여 산하 도서관의 奉仕活動을 調整하는 일 傘下 圖書館에 關하여 奉仕活動에 關한 報告를 받아 그 成果를 分析 評價하는 일 書誌의 統整, 기타 國家的 圖書館事業을 主管하거나 그 일에 關하여 傘下 圖書館을 指揮하는 일 <p>第 3 節 地域代表圖書館</p> <p>第51條(地域代表館) 1)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및 各道에 各各 1個씩의 “地域代表館”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前項의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 各級 圖書館을 統轄한다. 필요에 따라 市郡區에 그 地域代表館을 둘 수 있다. <p>第52條(施行令) 圖書館協力網의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 9 章 罰 則</p> <p>第53條(罰金) 1)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所管部署의 停館命令에 違反한 者는 罰金을 納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罰金의 額數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p>第54條(過怠料) 1) 第 7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當該 資料定價의 10倍에 該當하는 金額以下의 過怠料를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第 7 條에 規定한 資料가 非賣資料로서 이의 納義務를 違反하였을 경우에는 國立中央圖書館長이 定하는 바에 따른 過怠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p>附 則(1963·10·28 法律 第1424號)</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經過措置) 이 法施行當時 現存하는 圖書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다만, 私立의 公共 圖書館은 이 法施行日로부터 2月이내에 監督廳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p>附 則()</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 한다.

7. 圖書館法의 沿革

1955. 4. 16 : 韓國圖書館協會의 創立總會에서 圖書館法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이의 制定을 推進키로 決議

1956. 1. 7 : 圖書館法 第1次草案을 作成하였으나 推

進途中 流產

1957. 5. 8 : 韓國圖書館協會에 圖書館法 制定委員會를 構成

1957. 11. 15 : 圖書館法 第2次 草案을 作成 (6章 35條)

1958. 7. : 第2次草案의 內容을 一部修正 (4章 30條)

1958. 7. : 圖書館法 制定委員會를 行政分科委員會

로 改編하여 圖書館法의 制定推進과 기 타 行政의 問題를 檢討	1966. 3. 23 : 圖書館法施行規則을 文教部令 第172號로 公布
1958. 11. 20 : 圖書館法의 制定을 正式으로 國會에 提 出(閔壯植議員이 提出)하였으나 廢棄	1967. 3. 27 : 圖書館法施行令을 大統領令 第2964號로 改正
1959. 5. : 圖書館法 第3次 草案을 作成(4章 35條)	1969. 7. 19 : 圖書館法施行細則을 文教部令 第236號로 公布
1961. 6. 10 : 最高會議에 圖書館法制定을 建議	1969. 11. 3 : 圖書館法施行令을 大統領令 第4191號로 改正
1962. 7. : 次官會議에 上程하였으나 다시 廢棄	1971. 3. 20 : 韓國圖書館協會에서 圖書館法改正을 政 府에 建議(以後 5次에 걸쳐 建議)
1963. 4. : 最高會議에 再上程檢討	1979. 10 : 韓國圖書館協會에서 圖書館法改正案(草 案)을 作成(9章 54條)
1963. 10. 5 : 最高會議常任委員會에서 4章 29條로 된 現行法을 通過	1979. 11 : 圖書館法改正案(草案)을 政府에 建議
1963. 10. 28 : 法律 第1424號로 圖書館法을 公布	
1965. 3. 26 : 圖書館法施行令을 大統領令 第2086號로 公布	

1979年版

韓國出版年鑑

大韓出版文化協會刊 · 款 10,000원

변화 발전하는 韓國出版界의 78년을 종정리한 한국 유일의 出版年鑑.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主要 收錄內容〉

概觀篇

一般單行本, 雜誌, 書店, 圖書館, 印刷, 製紙 등의 1年概況.

圖書目錄篇

78年 1月~12月末까지 全國 각 出版社에서 出版된 總圖書目錄 收錄.

統計·參考篇

1978年度 一般圖書月別種別發行量, 一般圖書種別發行部數, 一般圖書種別發行面數, 一般圖書種別發行價格, 文學圖書장르別月別種數, 翻譯圖書月別種別發行量, 最近 10年間(69~78年) 年·月別 圖書發行量, 全國 各級學校學生數現況, 1978年度 國內製紙工場別紙類生產量, 標準規格版字量速見表

諸法規篇

出版社 및 印刷所登錄에 관한 法律과 그 施行令, 教科用圖書著作檢認定令, 기타 教科書關係法規, 淫亂文書에 관한 法規, 新聞·通信 등의 登錄에 관한 法律과 施行令,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 관한 法律, 營業稅法中圖書出版業에 관한 法令條文, 所得稅法中 出版業에 관한 法令條文, 著作權法과 그 施行令, 圖書館法과 그 施行令, 文化藝術振興法, 大韓出版文化協會定款, 韓國出版金庫定款, 出版金庫出版資金融資規程, 韓國出版協同組合定款, 中央圖書展示館運營規程, 韓國圖書雜誌倫理實踐要綱

名簿篇

出版社, 雜誌社, 書店, 圖書館, 印刷所, 紙業商, 製紙會社, 新聞·通信社, 放送局, 關聯團體, 發行人(出版社代表), 製冊所, 寫眞植字社, 寫眞製版社, 紙器社, 互印社, 金箔·ビ닐·크로스社

★ 圖書館에는 特別히 定價의 30% 割引으로 판매·地方 圖書館에서 주문하실 경우에는 7,000원(小額換)을 보내면 직접 우송해드림(郵送料 本協會 부담).

★ 注文處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05의 2 大韓出版文化協會管理部 73-5079